

대전관광공사 MICE 지원제도

구분		국내·국제회의			기업회의·인센티브관광			
					기업회의	인센티브관광		
지원대상	신청주체	○ 대전으로 유치, 개최하는 단체, 학회, 협회, 기관 또는 법인			-			
	기준	국제회의	A형	○ 「UIA 국제회의」 기준 -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-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며,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, 외국인 40% 이상, 5개국 이상 참가, 2일 이상인 회의				
				B형			○ 국제컨벤션협회(ICCА) 기준 국제회의 - 3개국을 순환하며 참가자수 50명 이상,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	
	국내회의	○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기준 -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, 100명 이상(외국인 50명 이상)참가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(※ 국내개최 전국단위 학술대회는 국내회의로 적용)						
	공통사항	○ 참가자 300명 이상, 전국단위 행사로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(※ 당해년도 개최단계만 지원 가능) ※ 국내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참가자는 B형과 동일한 금액 적용 (2만원)						
공통사항	※ 공통 지원 조건 : 대전·충청 MICE 얼라이언스 1개사 이상 활용 ※ 개최형태 기준 : 오프라인, 하이브리드(온라인+오프라인) ※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사의 중요도, 성격 등 지원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가능 ※ 정치, 종교행사, 경전대회, 시상식, 페스티벌 등 지원 목적에 어긋나거나 사회적 통념상 수용이 어렵고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, 공무원, 학생 등의 연수목적 행사는 지원불가							
지원제도	단계별	유치지원 (1단계)	홍보지원 (2단계)	개최지원 (3단계)	-			
	지원대상	국제회의의 A형		국제회의의 A형	국내·국제회의의(A형, B형)			
	지원규모 (한도)	최대 3천만 원		최대 2천만 원	○ 최대 2억 원 (국제회의의 A형) • 인원당 외국인 3만원, 내국인 1만원 • 특별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산정기준에 의함 ○ 최대 2천만 원 (국제회의의 B형, 국내회의) • 인원당 외국인 2만원, 내국인 1만원			
	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치제안서, PT, 홍보물, 기념품 제작 지원 유치 지지서한 / 메시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전광역시, 대전관광공사 사장 관계자 사전방한(대전답사), 유치결정 회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 항공, 숙박, 차량, 관광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인 이하, 이코노미석, 스탠다드룸 (※ 항공좌석은 협의 가능) 신청기관 주최 공식 오·만찬비,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치단 개별 식사비용 지원 불가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보물, 기념품 제작 신청기관 주최 공식 오·만찬비 및 공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홍보단 개별 식사비용 지원불가 전차대회(또는 유관회의) 홍보부스 설치·운영비 전차대회(또는 유관회의) 참가경비 1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회에 한함, 공사규정에 따름 <p>※ 개최 전차년도까지 신청 가능, 당해년도 신청 불가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보물, 기념품 제작(대전지역 업체 이용에 한함) 행사장 임차료(컨벤션센터, 호텔 등) 공식 오·만찬비 및 공연(촬영리셉션, 갈라디너 등) 참가자 숙박(※ 포상관광 제외) 대전 및 충청지역 관광지 입장료 및 관광 프로그램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(대전지역 업체 이용에 한함) 		
	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전·충청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최소 1개사 활용 - 행사 관련 제작물(홍보물, 기념품, 인쇄물 등)과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관광공사 후원 명칭 및 로고 노출, 행사장 내 홍보영상 상영 - 대전관광공사 및 대전광역시 홍보 기회 제공, 설문조사 등에 협조 -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필수 서류 제출 - 타 기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-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계획대비 행사 개최 결과 또는 유치 홍보활동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또는 축소 가능 - 참가자 명단 허위 및 중복 제출, 지출증빙서류의 위조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·환수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 - 대전광역시 유치·홍보·개최를 위한 지원금 수령 후, 개최도시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5년 동안 유치 및 개최지원 신청 불가 						
지원 가산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항목당 각 2%, 1+2 = 지원금의 최대 10% 까지 가산 가능 ① 대전·충청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이용 실적 (최대 5%) ② Green MICE 및 미팅테크놀로지 적용 실적 (최대 5%) 							
신청방법	신청시기	○ 연중 접수(수시신청,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마감) (※ 유치 및 사전홍보 : 활동 최소 1개월 전, 개최지원 : 행사개최 최소 1개월 전 신청 권고)						
	지원절차	○ 사업공고 > 지원신청 > 내부심사 >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안내 > 행사개최 > 결과보고서 제출 > 결과평가 > 지원금 지급						
	신청방법	○ "공문(기관 서식)"으로 신청서 제출						
문의처	○ 대전관광공사 MICE부로팀 김도영 주임 [전화 : 042-250-1325 / 이메일 : dykim@djto.kr]							